



프랑스 사법개혁에 관한 법제 정비

I. 입법의 과정

1. Outreau 사건

Pas-de-Calais 주의 Outreau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기소되었고, 그 중 18명이 임시 구류에 처해졌는데 재판이 장기화되어 그것이 3년이나 경과되는 와중에서 구금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살하였다. 피해자인 아동들의 진술은 정신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Fabrice Burgrand 판사에 의해 인정되었다.

3년 후인 2004년, 사건은 결국 비공개로 열린던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어 Paris 중죄재판소(Cour d'assises)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고소인들과 증인들의 허위증언이 밝혀지고 정신감정인과 담당판사의 무성의로 인한 오류가 판명되어 피고인 전원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결국 법관들에 대한 비난들 불러일으켰고,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로 이어졌다.

2. 사법개혁안 제출

위 사건의 의회조사를 참고하여 법무부는 형사소송의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안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법관에 대한 교육 강화, 국민들에게 법관의 행위에 관한 사

법제도의 비정상적인 운용에 대해 국가의 중재관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형사절차에서의 형평성 강화」로 요약된다. Pascal CLEMENT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하였다.

법률안은 2006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의회에 제출되었고 양원공동심의회에 회부되었다. 당초 개혁안에서는 ‘법관최고회의’에 대한 개혁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관노조의 반발로 인해 최종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최종개혁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찰유치시 심문과정을 녹화·녹음하고, 예심관사실에서의 심문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② 예심에서의 합의제 실시와 더불어 예심의 최대 기한을 정하여 단독예심의 오류를 시정한다.
- ③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즉 법관의 직무유기 또는 부당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공화국 중재관(옴부즈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개재판이 6개월마다 열릴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임시구금을 줄이도록 한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아동들이 불필요한

반복진술로 고통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심문을 전부 녹음한다.

3. 법률안 통과 및 공포

법안은 2007년 2월 24일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2007년 3월 1일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일부 조문을 위헌으로 판정하였다.

- ① 당사자의 권리의 본질적 보장을 이루는 절차규칙에 대한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 내리는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징계책임 신설은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 ② 공화국 중재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삭제되었다.

확정된 법률은 2007년 3월 5일 공포되었는 바, 법관의 선발, 교육 및 책임에 관한 법률(Lio n° 2007-287)은 2007년 3월 6일자 관보(n° 55) 4184쪽(text n° 1)에, 형사절차상 형평성 강화에 관한 법률은(Lio n° 2007-291) 같은 날 관보 4206쪽(text n° 5)에 게재되었다.

II. 법관의 선발, 교육, 책임

이 법은 총 3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법관의 교육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 법관교육의 강화

- ① 모든 법관들은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사법연수생들은 국립사법관학교 재학 중 최소 6개월 이상 변호사회 산하기관 또는 개업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를 하여야 한다.

2. 법관의 책임강화

당초 움부즈만에게 제기하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징계책임의 범주를 창설하였으나, 위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법관의 책임부분은 알맹이가 빠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은 법관은 최장 5년간 법관직 임용이 금지된다.

III. 형사절차에서의 형평성 강화

이 법은 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예심의 합의제 원칙

3인의 판사, 그 중 1인이 조정역할을 맡는다.

2. 예심부 신설

데크레(décret)가 정하는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의 예심판사들은 예심부에 통합된다. 이 예심부 소속 판사들은 중죄(crime)에 대한 유일한 권한 보유자이며, 예심중인 사건의 법률적용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이들은 또한 공동심리를 요하는 예심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3. 임시구류 통제

임시구류에 처하는 경우에 상호반대심문인 대심(對審)이 예정된다. 항소법원의 예심재판장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심리가 3개월 전부터 임시구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절차 전부를 심리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조사는 6개월마다 다시 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4. 녹화 및 녹음 의무화

중죄로 경찰유치중인 사람의 심문에 있어서 경찰관서 또는 헌병관서 내에 녹음 및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예심판사실에서 실시되는 심문에서도 녹음 및 녹화는 의무화된다.



5. 방어권 확대

- ① 예심판사는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장과 변호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여 질문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 또는 증인은 따로 고소인과의 대질심문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예심의 최종단계에서 검사장은 작성한 논고를 변호인에게 교부한다.
- ④ 예심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책사유와 면책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은 오랫동안 특권을 누려오다시피 하던 법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이자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관 70명과 법원서기 102명을 임용하는 데 무려 3000만 유로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를 추진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 법이 예정대로 잘 실시된다면, 고질적인 프랑스 사법 시스템의 문제인 재판의 지연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억울한 옥살이를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V. 평가와 전망

어이없는 사법피해가 계기가 되어 추진된 이 개혁

오 승 규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